

# 국내대회 유치 신청 및 선정 절차

## ■ 유치 신청 절차

### 1.유치신청

가.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시·도 탁구협회(이하 “시도협회”)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최계획서를 본 협회가 정한 기일 내 제출

1) 대회 개최 계획서 (별지1)

-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참가자 수용계획
- 유치신청금 및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조달방법(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포함)
- 선수단의 숙식과 관련 계획: 경기장 인근 숙소 및 기반시설 현황

2) 재정, 시설 사용 보증서 및 이행각서 등 (별지2~6)

3) 안전/방역 관리 점검확인서 (별지7)

4) 전국규모대회 유치 동의서 (대한체육회요청자료)

### 2. 개최지 결정

가. 개최지 결정은, 유치를 신청한 시·도협회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관련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최종결정

나. 본 협회는 유치신청 시·도협회가 제출한 유치신청서류에 대한 의견청취나 현장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본 협회 임원 및 사무처 담당자를 파견할 수 있음

다. 관련 위원회는 유치 희망 시·도협회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개최지의 유치지원금 금액, 행사 개최 능력(경기시설, 수용능력, 개최경험, 인력 등), 기타 인프로 등 제안 조건에 따른 서류 평가에 의해 1개 시·도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.

라. 유치희망도시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,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하며,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

### 3. 개최지 시·도 탁구협회의 의무

가. 개최가 결정된 시·도협회는 본 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회 승인조건과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

나. 관련 위원회는 유치신청 계획서에 따른 사후 점검을 개최지와 함께 실시해야 하고 협약서 및 유치신청서에 따른 계획 미 이행 시에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개최지를 취소할 수 있음

다. 개최가 결정된 시·도협회가 협약에도 불구하고 개최시기 및 장소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본 협회가 최종 승인하여 변경할 수 있음

라. 개최 결정된 시·도협회가 협약과 유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최를 반납할 경우, 해당 시·도협회는 협약 및 유치계획 불이행에 따른 모든 손실을 보전해야하며 개최를 반납한 연도부터 향후 2년간 전국규모탁구대회 등의 유치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

## ■ 유치 신청 조건

### 1. 유치 경비

- 가. 유치 승인 시 결정된 유치신청금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로 2주내 납입해야 하며 유치신청금에 대한 운영은 별도 지침을 따름
- 나. 유치신청금은 협회 수익금으로 처리되며 납부단체에 별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함
- 다. 대회운영지원금은 개최 2주전까지 본 협회 지정 계좌로 입금
- 라. 대회운영지원금 정산은 자치 단체와 협의하여 정산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
- 리. 성공적인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대회 상금 및 부상품, 초등부체재비 지원금 등이 예산서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
- 마. 대회운영지원금 외 개최 시도 지자체 또는 시도협회가 부담하는 경비
  - 체육관(본 경기장 및 연습장) 대관료 및 이용료(전기, 수도, 난방, 통신료 등 공과금)
  - 부대시설 사용료
  - 개최지역 시도협회 및 지자체 자체 모집 인력 제반 경비
  - 방역 지원(출입자 관리 및 체온 체크, 방역 인력, 시설 소독 등)
  - 의료 지원(의료 인력, 구급약품, 구급차 등)

### 2. 경기 시설

#### 가. 주경기장 관련



- 주경기장의 입지: 대회기간 참가자의 숙식에 불편이 없는 곳에 위치해야 함
  - 경기시설 설치 공간(경기구역): 국제규격 탁구대 설치 면적(길이 14m, 폭 7m, 높이 5m 이상의 직사각형 형태) 12대 이상 및 매트설치가 가능한 곳
- 단, 정규 규격에 다소 미달되는 경기장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의 보수 등 위원회의 요청 사항을 개최지가 수용할 경우 주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



- 대회운영본부(진행석 및 레프리스석) : 대회 기간 동안 운영 및 경기 진행을 위한 행정 구역 경기구역 전체가 보이는 경기장 내 공간 15m x 2m 내외로 테이블, 의자, 사무용 기기 등을 구비한 공간으로 통신수단(인터넷 등) 이용이 가능한 곳
- Call Area : 경기 출전 선수들이 출전 전 점검, 대기하는 장소 20m x 3m 내외로 테이블, 의자, 사무용 기기 등을 구비한 공간(또는 통로)



- 시상식장 : 시상대 및 백드롭(포토존) 설치가 가능한 경기장 내 구역
- 조명 : 시합 표면(탁구대 위) 최소 1,000룩스 이상, 그 외 최소 500룩스 이상
- 관중석 : 최소 2,000석 이상
- 부속실 : 심판대기실, 회의실, 휴게실, 도핑관리실 등

나. 연습장: 주경기장 내 또는 인근에 경기장과 유사한 조건의 연습장을 운영해야 함

연습장 설치 예시



- 다. 숙박시설 : 대회를 유치하는 지자체 및 시도협회는 선수단 및 관계자의 규모에 따른 적절한 숙박시설을 대회 기간 동안 확보해야 함
- 라. 식당 : 경기 세부일정에 따른 시작·종료 시간을 고려하여 선수단 및 관계자가 경기장 인근 및 개최지역에 머무르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

3. 운영요원

- 가. 심판 : 본 협회에서 파견
- 나. 경기운영요원 : 본 협회에서 파견
- 다. 시설운영요원 : 대회 시설 준비, 철수 및 기타 대회 중 시설물에 관한 필요 인력은 **개최지 시도협회에 확보**하여 지원
- 라. 운영보조 및 환경관리(청소)요원 : 대회 개최 계획에 따라 본 협회와 협의하여 개최지 시도협회가 확보하여 지원
- 마. 의료지원 : 개최지 지자체 또는 시도협회가 확보하여 지원

의료지원 운영 예시



- 바. 방역지원 : 개최지 지자체 또는 시도협회가 확보하여 지원 (※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)

## 방역지원 운영 예시



사. 자원봉사자 : 매표, 안내, 홍보, 급수 봉사 등 개최지역 지자체 및 시도협회의 유치신청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지원

### 4. 홍보

가. 개최지는 유치 신청 시 대회 사전 홍보 계획, 홍보물 설치 및 운영 계획, 지방 언론홍보 계획 등 제출한 대회개최계획에 의거 홍보활동을 하여야 함

나. 개최지 시도협회는 개최지 탁구 종목 활성화를 위해 동호인, 탁구 클럽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함

### 5. 안전/방역 관리

가. 대회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유치신청 시 제출한 안전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안전관리, 질서 유지 및 상황에 따라 방역 관리 활동을 해야 함

나. 대회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제출된 안전관리 점검확인서 상 유관 기관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관리하여야 함

## ■ 개최지 선정 평가 기준

평가 항목	평가 기준
유치 신청금	대회 유치 지원금 관련 - 유치 신청금
대회운영지원금	대회 유치 지원금 관련 - 협회 및 시도협회 대회운영지원금 규모 - 예산 편성 및 정산 자율성(시상금, 초등부 지원금 지급 등)
운영시설	대회운영에 필요한 환경 - 조명 시설(1천 룩스 이상) - 음향, 인터넷 등 대회 운영 관련 설비 상태 - 주차장 등 시설 이용 편의성
연습장	연습장 운영 환경 - 경기장내 연습장 (주경기장과와의 거리) - 크기 및 운영시간 - 기타 편의 시설 보유 등 이용 편의성
부속실	경기시설 외 기타 부속실 이용 환경 - 이용 목적에 적합한 실 보유 현황 및 이용 편의성
경기장 환경	경기시설 이용 편의 환경 - 안전, 청결도 등 이용 편의성 - 접근성
경기 조건	경기시설 설치 및 운영 환경 - 정규 규격 경기 공간(탁구대) 12대 이상 설치 가능 여부 -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한 경기 시설 관련 부분
시설 이용	시설 이용 관련 - 대관료 및 이용료 무상 지원 여부
필수시설	대회참가자들의 대회기간 개최 지역 체류 환경 - 경기장 인근 합리적 가격의 숙박 업체 운영 현황
운영지원	운영 지원 관련 - 지자체 또는 시도협회의 충분한 자체예산 규모 - 지자체 또는 시도협회의 전문 행정인력, 자체 봉사 인력 확보 및 운영 현황
주변 안전	참가자 안전 및 건강 위해 요소 관련 - 대회 운영 및 참가자 안전 위해 요소 - 안전 관리 역량
기타사항	개최지 특이 사항 등

※본 평가 기준은 예시로서 실제 평가 반영 요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